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6)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서비스(630401)	정기	1,000억원대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해상터미널 운영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 □□항

Text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건설·운영 및 유지

Text 관리 등을 목적으로 '0X년 설립되었으며,

Text - 준공 후 현재까지 외형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업 초기 투입된

Text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임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u>출</u> 내역

Special

al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기타지급이자 손금부 인	10704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손금 부인 ('21년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감가상각비 손금부인	10904	취득 후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의 사용 개시전 감가상각비 손금 부인

Text ○ (개정 세법 적출사례) 2021년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 Text 으로 추가된 단서조항에 의한 개정 세법을 즉시 적용한 적출 사례

Text Ⅱ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1

❖ 기타 지급이자 손금부인 (항목코드: 10704)
차입일로부터 지급일 1년 초과하는 특관자 이자 손금 부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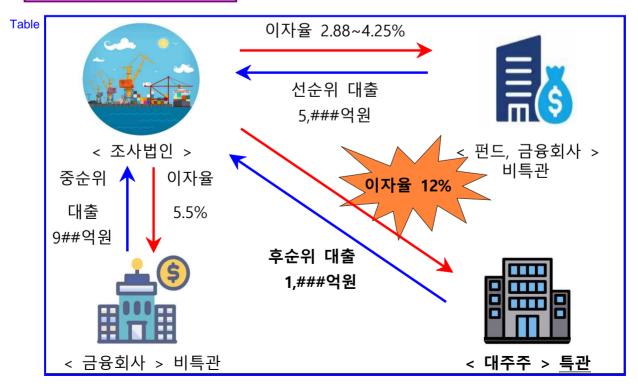
Text ○ 조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항

Text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대한 <u>초기 투입된 조달자금에</u>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임

Text - 후순위 대출의 높은 이자율이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것에 착안하여 Text 조사법인의 부담하고 있는 고액의 이자비용을 검토

Text <u>○ 조사대상연도 총 차입금은 8##,5##백만원으로, 이자율은 선순위</u>
Text 대출 3.13~4.25%, 중순위 대출 5.5%, 후순위 대출 12%로 확인됨

Text ○ 조사법인 차입금 현황



Text 나. 후순위 대출 관련 언론보도

Text O KPI뉴스 (2021.09.16.)

Table

뉴스 국민연금, 장부상 후순위 채권 만들어 1,300억대 '고리대금업' 논란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운영업체인 일산대교㈜를 인수하면서 <u>후순위</u> <u>차입금</u> 361억원을 대출해주고, <u>연리 20%의 고리</u>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산대교㈜는 2014년부터 상환기간인 2036년까지 매년 20%씩 모두 1,375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해 그 동안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됐다.

(...중략...)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미 투자 <u>원금 이상의 이자</u> 수익을 챙긴 셈인데 앞으로는 <u>이자 수익에</u> 더해 흑자로 전환한 일산대교㈜의 배당금까지 챙기게 될 것" 이라며 (...중략...)

이재명 지사는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일산대교 문제는 사채에 가까운 높은 이자율, 투자 금액 대비 과도한 수익측면에서 보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 에 가깝다" 고 지적한 바 있다.

Text ○ 아주경제 (2016.10.14.)

Table

뉴스 "천안논산 고속도로, 국민상대 20% 이자 고수익 올려"

이해찬 의원이 ㈜천안논산 고속도로로부터 받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동안 주주단으로부터 3,037 억원을 <u>후순위 대출</u>로 차입해 5,633억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수익률은 연평균 17%이고, 향후 지급할 이자액도 최소 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u>후순위 대출로 주주들은 높은 이자수익을</u> 올렸고, <u>이자가 비용 처리되면서</u> 그만큼 순이익이 감소해 법인세를 덜 내게 됐다.

이해찬 의원은 "주주단과 경영진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오로지 최대의수익을 얻기 위해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는 행위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며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민자SOC 사업을 점검해 개선하고 향후 민자 사업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ext **2. 조사기법**

Table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조사법인은 외형 증가추세에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Text 초기 투입된 조달자금에 대한 고액 이자비용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이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Text < 조사법인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 >

(백만원)

8##

2#,###

이자산화앤

이자박생액

8##

6#,###

구분	차입처	이자율	차입금	(장부계상)	(실제지급)
	펀드	3.9%	8#,###	3,###	3,###
	펀드	2.53~3.43%	3##,###	9,###	8,###
선순위	손해보험 3.13~4.03%		1#,###	3##	4##
	손해보험	3.13~4.03%	1#,###	3##	4##
	은행	3.13~4.03%	1##,###	2,###	3,###
	생명보험	5.5%	5#,###	2,###	2,###
중순위	손해보험	5.5%	1#,###	8##	8##
중군기	손해보험	5.5%	1#,###	8##	8##

^{Text} ○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고액 이자율 적정성 검토

5.5%

12.0%

은행

특관법인

후순위

Text - 후순위 채권이라 하더라도 주주인 특수관계자에게만 다른 대출에 Text 비하여 고액의 이자율을 주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등 <u>부당행위계산의 부인</u> 방법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과세방법을 검토하였으나,

1#,###

19#,###

Text - 관련 심판례 등을 검토한 바 처분 유지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어

Text 단순하게 이자율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Text (심판례 내용 : 후순위대출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Table

심판례 대법원 2016두40375, 2018.07.26. 국패

[제목]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불리한 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투자이익의 회수기간은 매우 장기간이므로 사업시행자(대주주)가 투자비용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부담하게 됨.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높은 이자율이라 할 수 없다.

Text ○ 관련 법령 재검토

Text - 특수관계자에게 후순위 고액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Text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손금 부인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

Text 법령부터 다시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법령개정 사항(**밑줄 부분**

Text 추가)을 확인함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31443호, 2021.02.17.] 일부개정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Table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Text 2021.02.1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법령개정사항(특례배제 규정 추가)
 - Text (원칙)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 Text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Text * 일반적으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봄
 - Text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기업회계와 차이를 해소
 - Text 하기 위해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
 - Text 이를 손금으로 인정
 - Text (특례배제)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
 - Text 관계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특례 적용을 배제
 - Text * 21.2.17. 개정, '2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Text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자 후순위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서, 약정서,

 Text 지급내역 등을 검토한 바,
 - Text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하,
 - Text 원금이자)와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발생된 연체이자(이하, 복리이자)의
 - Text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을 확인함
 - Text 원금이자 : 매분기말(3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
 - Text 복리이자 : 이자에 대한 이자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만 기재
 - Text 되어 있을 뿐,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 Text 있지 아니함 (아래 계약서 참조)

Text ○ 조사법인과 대주주 대출 계약서

Table 계약서 후순위 대출 약정 계약서 발췌

4.4 **Deferment of Interest**. On and after the Completion Date, in the event the Borrower is unable to pay any amount of interest due and payable under Section 4.3 above due to funds not being available in the Surplus Account or failure to satisfy the Restricted Payment Requirement, such interest shall be deferred and paid promptly upon funds becoming available in the Surplus Account and the satisfaction of the Restricted Payment Requirement ("**Deferred Interest**"). The rate of interest applicable to the Deferred Interest shall be the Interest Rate and shall accrue from day to day,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and a 365 day year, including the Interest Payment Date on which it was originally due but unpaid, but excluding the date on which the Deferred Interest is paid.

"Interest Rate" means the following rates for the following periods:

- (a)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 a fixed rate of ten percent (10.0%) per annum; and
- (b) During the Operation Period:
 - a fixed rate of twelve percent (12.0%) per annum;

< 해석 >

4.4 이연이자. 완공일 이후 차주(조사법인)가 4.3 조항에 따라 <u>만기가 도래한 이자 등의 비용을</u> 잉여금 자금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지급제한 조건이 미충족되어 <u>지급이 불가할 경우, 그 이자는 이연되며</u>, 잉여금 자금이 충분하고, 지급제한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u>이연된 이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Interest Rate</u>이며, 때때로 누적되며, 1년 365일 실제 일수에 기초하여 산출되는데, 이자지급일은 포함되고, 이연이자가 지급된 날은 제외된다.

"Interest Rate" 은 다음 기간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 (a) 건설기간 동안 : 연 10% 고정 금리
- (b) <u>운영기간 동안 : 연 12% 고정 금리</u>

Text ○ 따라서 조사팀에서는 원금이자는 분기별 지급으로 약정시기가 정해져 Text 있고 년도말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손금 <u>적정하지만</u>

Text - 복리이자는 잉여금 발생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Text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법인이 기간경과분에 Text 대해서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Text - 특수관계자인 주주사에 차입일로부터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Text 이자는 특례배제 대상으로 판단하여, 관련 이자 지급 세부내역을

Text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복리이자에 대<u>하여 손금불산입함</u>

Text < 조사법인 후순위 대출 이자 지급 및 손금불산입 금액 >

(억 원)

Table

le	귀속	이자비용 (장부금액)	원금이자	복리이자	이자 상환액	<u>손금</u> 불산입*
	'19	#6#	#3#	#3#	_	_
	'20	#3#	#3#	#0#	_	-
	'21	#8#	#3#	#5#	_	#5#
	'22	#3#	#3#	#0#	#O	#6#
	'23	#6#	#3#	#3#	#O	#0#
	계	#,3##	#,1##	#,2##	#O	#,4##

Text * '21년 법령 개정사항으로 '19, '20사업연도는 손금 인정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 (납세자 주장) '21년 법령개정사항으로 기존 사업연도에 정상적으로 Text 손금 인정되었으며, 원금이자와 복리이자를 구분없이 손금 산입 Text 하는 것이 정당함

Text ○ (조사팀 <u>과세논리)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u> Text 하는 것은 기업회계와 차이를 해소해 납세자 세무조정 부담을 Text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나,

- Text 개정된 법령사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이자지급시기를
 - Text 임의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는 손금 처리하고, 채권자는
 - Text 익금불산입 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된
 - Text 법령으로 시행시기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 Text 원금이자와 복리이자는 성격이 다르고, 계약서 등에서도 구분함에
 - Text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복리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정당함

Text 다. 도전적 과세 및 처분 유지

- Text 법령 개정사항으로 기존의 심판례가 없는 사항이기에 새로운 법령에
 - Text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당한 과세논리를 구축하였으며, 조사
 - Text 법인에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 및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
 - Text 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
 - Text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 Text 조사종결 후 불복없이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함

Special

적출2

❖ 감가상각비 손금부인 (항목코드: 10904)

취득 후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부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 Text 조사법인은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년 외형 증가
 - Text 추세에 있어 조사대상연도 고액의 컨테이너 하역 장비가 설치된
 - Text 것으로 확인됨
 - Text 조사대상연도 설치가 종료되었음에도 연도말 장비 금액의 10%가
 - Text 미지급금으로 확인되어 쟁점자산의 정상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 Text 착안

Text 나. 조사대상연도 설치한 컨테이너 하역 장비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조사법인은 2019.2월 중국 A법인과 컨테이너 하역장비 13대 건설

Text 계약을 ###억원에 체결하고 2020.12월 준공되어 감가상각 개시한
것으로 확인됨

Text - 미지급금 내역을 확인한 바, 중국 A법인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Text 10%인 ##억원이 2020년말 확인되고, 최근 사업연도 결산서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

- Text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대금지급은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 Text 지급, PAC* 발급시까지 계약금액의 누계 90% 지급, FAC* 발급시
 - Text 계약금액의 누계 100% 지급 조건으로 확인됨
 - Text * PAC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 예비준공증명서
 - Text FAC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 최종준공확인서
- Text 2020년 설치가 종결된 자산에 대하여 최근까지 미지지급으로 남아
 - Text 있는 이유를 조사법인에 확인한 바, 일부 기능상 문제로 중국 A법인과
 - Text 클레임 협상 중이라 소명함
 - Text 설치일부터 정상 가동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장비 운영에는
 - Text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함
- Text (조사법인 품의서 확보) 조사팀에서는 조사법인의 방대한 양의 공문
 - Text 및 품의서를 건건이 분석하여 조사법인과 중국A법인의 건설장비
 - Text 잔금지급과 관련한 품의서를 확보함

Text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Table

품의서 조사법인 내부 문서

INTERNAL MEMORANDUM

품의번호: 2022-재무팀-0105 날짜 : 2022-09-19

담당자/부서: 재무팀

협의부서/관계부서: 자산관리팀

제목 : Construction Agreement Phase II 잔금지급 유예요청의 건

품의종류

지출품의(보류)

품의내용

- 1. 와 QINGDAO 가 19/02/18에 체결한 Construction Agreement 관련입니다.
- 2. Construction Agreement 상 Phase II(3STS, 8ARMG)의 PAC를 발급하였고, 이에 잔 금 10%를 제외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3. 그러나 해당장비의 최종 테스트 과정에서 운영에 투입할 수 없는 비정상 가동상황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비정상 가동상황을 소상히 읍소하고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측은 답변지연 및 무효한 개선책들만 제시하는 등 비 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 4. 이에 장비구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한 생산성 증대 및 추가물동량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자산관리팀의 자체 수선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증대되었습니 Ct.
- 5. 보고일 현재 해당장비의 수선이 완료되어 2022년 10월 01일 부로 운영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후 FAC 발급 및 잔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 자체 수선비용과 운영투입 지연에 따른 손실액, 특히 비협조로 인한 LD에 대한 한 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6. 이에 재무관리팀은 보고일 현재, Phase II 미지급액 USD 보류하고자 하오니, 재가 부탁드립니다.

Text ○ 상기 조사법인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조사법인에 확인한 바, 설치된 Text 13대의 건설장비 중 11대가 불량으로 FAC는 발급되지 않아 미지급금 10%가 남아 있으며,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2.10월이었음을 시인함

Text ○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하역장비 11대의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바. Text 아래와 같이 확인됨

Text < 감가상각 개시시기 오류 자산 재계산 >

(백만 원)

Ta

able	구분	취득가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당초	#5 #2#	#38	#,#49	#,#49	#,#49	#,#87
	경정	#5,#3#	_	_	#86	#,#47	#,#33
	차이 (<u>손금불산입</u>)	_	#38	#,#49	#,#63	△298*	#,#54

Text * 상기 하역장비는 기부채납 자산으로 관리운영권 종료기간에 맞춰 내용연

Text 수 적용(업종별 자산내용연수보다 낮게 적용)하여 음수 발생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나. 명백한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Text ○ 조사법인은 조사팀에서 계산한 감가상각비 과다 금액을 인정하고 Text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없이 조기 결정 신청서를 Text 제출함